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 1998. 04. 06.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6. 08. 05.  
 개정 : 2017. 07. 07.  
 개정 : 2018. 08. 07.  
 개정 : 2019. 06. 07.  
 개정 : 2022. 06. 03.  
 개정 : 2023. 05. 12.  
 개정 : 2024. 02. 02.

담당 : 교학팀(02-950-5405)

###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구분 및 직무)	제3조의2(용어의 정의)
제4조(조교의 정원)	제5조(자격)	제5조의2(면접)	제6조(임용)
제6조의2(재임용)	제7조(임기)	제7조의2(수습기간)	제8조(복무)
제9조(보수)	제10조(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조교의 임용,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조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분 및 직무)** 조교는 직무에 따라 연구조교, 실습조교, 교육행정조교로 구분하며,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단, 실습조교 및 교육행정조교는 연구조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2019.6.7.)(개정2024.2.2.)

1. 연구조교: 연구소 관리 또는 교수의 연구 및 교육 보조 업무, 연구용 기자재 관리, 기타 학사지원 보조 업무(개정2023.5.12.)
2. 실습조교: 실험 실습 관리 또는 교수의 연구 및 교육보조 업무, 실험 실습용 기자재 관리, 기타 학사지원 보조 업무(개정2019.6.7.)(개정2023.5.12.)
3. 교육행정조교: 전공 행정에 관한 업무, 기타 학사지원 보조 업무(개정2013.7.1.)(개정2023.5.12.)(개정2024.2.2.)

**제3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임용 : 신규채용,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재임용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기간부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용어의 정의는 본 대학교 직원인사규정에 준한다.

[본조신설 2016.8.5.]

**제4조(조교의 정원)** 전공별 조교의 정원은 전공의 규모 또는 성격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격)**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조교의 경우 직무 특성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 할 수 있다.(개정2003.3.1.)(개정2018.8.7.)(개정2022.6.3)

1. 연구조교, 실습조교는 해당 분야 전공자(개정2019.6.7.)
2. 교육행정조교는 본 대학교 졸업자 또는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개정2013.7.1.)(개정2024.2.2.)

**제5조의2(면접)** ① 조교의 면접은 교목실장, 교학팀장, 해당 학과장이 실시한다.(신설2017.7.7.)(개정2018.8.7.)(개정2019.6.7.)(개정2023.5.12.)(개정2024.2.2.)

② 면접자 3인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를 추천한다.(신설2024.2.2.)

**제6조(임용)** 조교는 교학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03.3.1.)(개정2015.2.6.)(개정2018.8.7)

**제6조의2(재임용)** 조교의 재임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신설2016.8.5.,2019.6.7.>

① 요건 : 조교로서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교 재임용에 관한 근무평정표(이하 “근무평정표”라 한다)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2017.7.7.,2019.6.7.>

1. 평가는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근무평정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신설2019.6.7.>
2. 평가자 3인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신설2019.6.7.>

② 절차 : 재임용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2. 위 호의 통보를 받은 재임용대상자는 재임용 요건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교학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8.7.>
3. 교학처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총장은 교학처에서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재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8.5.]

**제6조의3(임용계약서)** 조교의 임용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교 임용 계약서를 작성한다.<신설 2017.7.7.>

**제7조(임기)** ① 조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의2에 따라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2018.8.7.,2019.6.7.>

② 삭제 <개정2016.8.5.>

③ 조교는 임기 중 복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는 당해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2017.7.7.>

**제7조의2(수습기간)** ① 신규로 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는 포함하며,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질이 부적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조직과의 융화, 인품,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는 수습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6조의 2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6.7.]

**제8조(복무)** 조교의 복무는 본 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에 준한다.<개정2015.2.6.>

**제9조(보수)** 조교에게는 그 직능에 따라 매월 소정의 봉급을 지급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신설2017.7.7.>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8.5.><개정17.07.07.>

<b>조교 재임용(수습)에 관한 근무평정표</b>			
평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평정기간은 직전 임용시작일부터 임용종료 3개월 전까지로 한다.			

<b>피평정자</b>	성 명		임 용 일	
	소 속		업무내용	

**평가사항**

평가구분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기초업무수행능력	기본적인 업무처리는 잘 하였는가?	10점	
협 동 심	타부서원과의 협동은 잘 이루어졌는가?	10점	
소 통 능 력	학생 및 교수와의 소통은 잘 이루어졌는가?	10점	
준 법 성	복무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10점	
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수행하는가?	20점	
근무태도	평소 근무태도는 양호한가?	20점	
책 임 감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20점	
<b>합계</b>		<b>(100점 만점)</b>	

<총평>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책)

(성명)

(서명)

한국성서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신설17.07.07.>

## 조교 임용 계약서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이하 “갑”이라 한다)은(는) (이하 “을”이라 한다)  
과(와) 조교임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임용직위) “갑”은 “을”을 한국성서대학교 조교 로 임용한다.
2. (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보수) “을”의 보수는 등급별 연봉제로 하며, “갑”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별도로 정한다.
4. (의무) “을”은 임용기간 중 한국성서대학교 조교로서 [별첨1]의 임용조건과 학내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재계약) “을”과 “갑”은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전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별첨1]<신설17.07.07.>

## 임용조건

### 1. “갑”(이하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갑”은 한국성서대학교의 신앙신조, 설립이념, 교육목표, 대학헌장,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이행하며, “을”의 호봉, 진급, 보직 및 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을”이 본 임용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물어 해약할 수 있다.

### 2. “을”(이하 “조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 1) 조교는 ①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신앙고백(별첨2)을 본인의 신앙고백으로 확인하며(서명 : \_\_\_\_\_), ② 설립목적과 이념, 그리고 교육목표(별첨3)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서명 : \_\_\_\_\_), ③ 대학헌장,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위의 ①항, ②항, ③항을 가르치는 일과 교원으로서의 근무 시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 2) 조교는 총장, 소속 분야 및 기타 상급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
- 3) 조교는 복무규정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한다. 단, 대학교의 총장의 재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대학교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 4) 조교는 학기 중에는 휴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병가, 방학기간 중의 휴가 또는 출장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조교는 대학교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지도할 뿐 아니라 개인지도교수로서 특별히 위임 받은 학생들을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 조교는 또 각종 대학교의 행사 및 학생들의 과외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학생이나 학부형 기타 외부인들이 대학교에 관한 타당한 상담 또는 문의 시 친절하게 상담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을 오도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사항에 순복해야 한다.
- 6) 조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7) 조교는 대학교에서 매일 아침(오전 8시 30분)에 드리는 교직원 기도회와 학기 중 매일 주야간에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총장이 소집하는 직원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임용조건에 동의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학교의 제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_\_\_\_\_ (인)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별첨2]<신설17.07.07.>

## 우리의 신앙고백

### 한국성서대학교

나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과 인생은 하나님의 직접 행동으로 창조된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과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얻으신 승리의 속죄와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과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육체의 부활과 그의 재림하실 것과 성령으로 인한 중생의 신생과 하나님의 은혜로써 주어진 선물인 영생을 믿습니다.

#### 우리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서는 사단법인 성서선교회의 신조인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서 본 선교회 산하의 모든 교회의 교역자, 성도 및 모든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숙히 서약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성서전체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출17:14, 34:27, 민33:2, 사8:1, 30:8, 34:16, 렘25:13, 30:2, 36:27, 32, 겔24:1,2, 단12:4, 하2:2). 이상은 성서의 영감에 대한 구약의 증명이요 신약도 역시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마15:4, 행1:16, 히1:5, 3:7, 4:3, 5:6, 7:21, 고전2:11-14, 14:37, 고후13:3, 살전2:13, 딤후3:16).

#### 2. 성부로서의 하나님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이신 유일의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인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 뿐이다.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현현하여 계신다. 성부라는 이름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일위이심을 표시하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요(고전8:6, 엡3:14-15, 히2:9, 골1:17) 전 인류의 생명의 시작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참된 기독교자들의 아버지로서 계시되었다(마5:45, 6:6-15, 요1:14, 18, 5:17-26, 8:54, 14:12-13, 롬8:15, 요일1:3).

#### 3. 성자로서의 하나님

성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삼위일체의 제이위이시다. 그는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우주의 보존자이시며 빛이시요, 생명이시며 전 인류의 구속주이시다(요1:20-30, 롬9:5, 빌2:6, 요1서5:20). 그러므로 그에게는 신적 이름과(렘23:5-6, 사9:6) 신적 속성이 부여되었다(사9:6, 마18:20, 요2:24-25, 21:7, 빌3:21, 계1:8). 따라서 그의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는 신적이었다(마 9:2-7, 눅10:22, 요3:35, 엡1:22, 빌



3:21, 골1:17, 히1:10-12). 그러기에 그에게는 신적 영광이 부여 되었다(요5:22, 25-30, 엡1:3-14, 계 1:9-20).

#### 4.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똑 같이 인격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오(요14:16-17, 26, 15:26, 16:7-15, 롬 8:26, 엡4:30, 행16:7, 고전12:11, 창1:2, 6:3, 행8:29, 13:2, 고전2:10-11, 눅1:35, 4:14, 행10:38, 롬8:11, 15:13, 고전2:4) 그리스도의 영이시며(롬8:9, 갈4:6) 그리스도에 의하여 파송되었으나(요16:7) 그리스도와 동일하시며(고전2:10-11, 고후3:17) 또한 신적 이름과(행5:3-4, 고전3:10, 딤후3:16) 신적 완성이 부여되어 있다(시139:7-10, 사40:13, 15, 12:11, 히9:14).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업은 곧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다(창1:3, 욥26:13, 시33:6). 성령은 이 업무에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심령에 감동감화의 역사를 통하여(출28:3, 31:2-3, 35:35, 3:22, 요3:34, 고전2:13, 벧후1:21) 교회를 건설하사 그 안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신다(엡1:22-23, 고전3:16, 12:4, 요14:26, 16:13-14, 행5:32, 히10:15, 요일2:27).

#### 5. 인간론

##### 인생의 기원

우주 전체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써 창조하셨으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흠을 빚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로 진화의 결실이 아니다(창1:26-27, 2:7, 18-19, 21-25, 5:1, 9:6, 고전11:7, 골3:10).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으니 이는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인생의 타락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범치는 그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전 인류는 그 죄의 댓가로서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롬5:12-19, 엡2:3). 따라서 인간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선이라고는 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요5:42, 롬7:18-23, 8:7, 고후7:1, 엡4:18, 딤후3:2,4, 딤후1:15, 히3:12).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이 자기 죄의 사슬을 벗어나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요1:13, 34, 3:5, 6:44, 15:4,5, 롬 7:18, 24, 8:7, 8:1, 고전 2:14, 고후3:5, 엡2:1, 8-10, 히11:6). 그리고 이 죄는 보편적이요(왕상 8:46, 시143:2, 잠20:9, 전7:20, 롬3:1-12, 갈3:22, 약3:2, 요1서1:8,10) 선천적이니(시151:5, 욥 14:4, 요 3:6) 이로 인하여 인생은 영원히 유죄 선고 아래 있는 것이다(롬5:12-14, 요3:5, 엡2:3, 요 일5:12). 이상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다.

#### 6.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완전한 인생으로 탄생하셨다(마1:20, 8:29, 26:63, 눅1:34-35, 요1:14, 18, 49, 3:16, 11:27, 롬8:3, 갈 4:4, 요일4:2). 그러기에 성육신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시로되 죄는 없으시다(고후5:21, 빌2:5-8).

#### 7.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전 생애는 탄생하시던 그 순간부터 형극의 길이었으며 고난의 생애였다. 그의 고난은 오직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속적 번제물로 봉헌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험악

한 갈보리 도상이었다(신21:23, 사53, 마4:1-11, 눅22:28, 요1:29, 12:27, 행13:38-39, 롬3:26, 5:6-8, 고후5:21, 갈3:13, 히2:18, 4:15, 5:7-9, 9:28, 벤티전2:24, 3:18).

#### 8.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영육의 완전 재결합과 동시에 그의 인간성 안에 있는 본래의 순수성과 완전성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칭의와 중생과 영생의 보증이며 참된 기독교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신 처음 익은 열매이다(막16:9-11, 14-18, 눅24:31, 36, 39, 요20:11-29, 21:7, 행1:3, 9-11, 2:23-24, 3:13-15, 7:55-56, 롬4:24-25, 6:4-5, 9, 8:11, 34, 고전6:14, 15:1-6, 20-22, 고후4:10-11, 13:5, 갈2:20, 엡2:6-8, 골1:27, 2:10,12, 살전4:14, 빌3:10, 히1:3, 4:14, 7:25, 10:10-14).

#### 9.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부활의 보증적 완성이다. 예수의 지상에서의 모든 고난의 생애는 그의 승천에 의하여 하늘나라에 넘쳐흐르는 모든 영광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으니 이는 최고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이다(마26:64, 요14:2-3, 17:24, 행2:33-36 5:31, 엡1:20-22, 벤티전3:22, 히10:12, 계3:21, 22:1).

#### 10. 재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그의 재림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요 세상에 낳던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전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마25:31-34, 눅3:17, 요5:22, 27, 행1:11, 10:42, 17:31, 롬2:16, 14:9, 고전1:7-10, 고후5:10, 딤후4:1, 딤후2:13, 약5:9, 계1:7).

#### 11.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최후의 명령이다. 여기에는 ① 예수의 명령과 ② 참된 기독교자의 사명과 ③ 세계의 복음화 등 삼대 명제가 함유되어 있다(마28:18-19, 막16:15, 눅24:47, 요17:18, 행1:8, 5:32, 고후5:18-19).

#### 12.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참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 몸이 되었으며 참된 기독교자들은 그 지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파쟁이나 교권 투쟁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분열될 수도 없으니 이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회에 속한 참된 기독교자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사랑과 평화로써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기에 힘 쓸 것뿐이다(롬12:4-5, 고전1:10-13, 12:12-27, 갈5:13-15, 엡1:22-23, 2:19-22, 4:3-6, 빌2:1-5).

■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별첨3]<신설17.07.07.>

## 설립 목적과 이념

한국성서대학교는 기독교가 자유주의적이요, 인본주의적이며, 세속적이요, 유물주의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목도하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주의 교리를 교수하여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한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성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영적 구원에 필요한 성서의 심오한 진리와 그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심어 국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영적 구원을 위한 선구자 즉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새로운 싹을 내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역군을 양성하려고 한다.

### 교육 목표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복종과 봉사적 실천생활을 통하여 생동하는 관계를 가지게 하려고,
2.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봉사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려고,
3. 성경의 역사에 의하여 영원한 소망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려고,
4. 성서가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건전한 인격자를 찾으려고,
5.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6. 성서적인 근본주의 신학에 견고히 서서 모든 이단적인 사이비 기독교 학설에 미혹되거나 타협됨이 없이 순수한 성서 중심의 보수신앙을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순수한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7. 유명한 사람이나 어떠한 교파나 교단이나 재물 따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8. 주어진 직장에서 능동적이요 효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어 봉사하는 지도자를 산출하려고,
9. 성서에 입각한 순수한 복음 진리로써 정신무장을 하고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 조국의 지역사회에서 신음하는 모든 겨레들을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조국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척자를 찾으려고,
10.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 인류의 심령에 평화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명받은 한 알의 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본교의 교육목표이다.